

의안번호	2204816
의 퇴 인	김주영의원
회 답 일	2024.11.5.
추 계 번호	24B44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의 요양 기간 중 부모가 그 자녀의 간병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퇴직한 부모에게 부모돌봄 휴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6년 1억 4,000만원~3억 1,000만원, 2030년 1억 6,200만원~3억 6,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억 5,400만원~16억 7,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본 추계서의 시나리오는 “부모돌봄 휴업급여”의 “지원단가”에 따라 구분됨
 - (시나리오1) 2023년 기준 월평균 육아휴직 지원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시나리오2) 부모돌봄 휴업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2025년 기준 최저임금에 국회예산정책처 최저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시나리오3) 휴업급여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평균 휴업급여에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시나리오1)	253	263	273	283	294	1,367	273
추가재정소요(시나리오2)	310	322	334	346	360	1,672	334
추가재정소요(시나리오3)	140	145	150	156	162	754	151

-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제1항)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호의 부모돌봄 휴업급여로 봄	의무규정
2	안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의 출생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봄. 이 경우 그 출생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봄	의무규정
3	안 제91조의22(부모돌봄 휴업급여)(제1항)	건강손상자녀의 요양 기간 중 부모가 그 자녀의 간병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부모돌봄 휴업급여를 지급함. 이 경우 부모돌봄 휴업급여 지급기간은 2년으로 함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건강손상자녀를 간병하기 위하여 휴직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것 2. 다른 간병인이 없을 것(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 해당 요양 기간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의무규정
4	안 제91조의22(부모돌봄 휴업급여)(제2항)	제1항에 따른 부모돌봄 휴업급여는 휴직하거나 퇴직한 부모의 임금을 기준으로 제52조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되, 부모돌봄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근로시간을 단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다)하거나 퇴직한 후 다른 사업장에 단시간 취업을 하여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함	의무규정
5	안 제91조의22(부모돌봄 휴업급여)(제3항)	건강손상자녀로 태어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요양 기간 중에 부모가 이 법에 따른 부모돌봄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부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항)	돌봄 휴업급여 지급 기간에 상응하는 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부모의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제52조의 휴업급여에서 부담하며, 사업주가 유급으로 휴가를 주면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수급권자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함	
6	안 제91조의 22(부모돌봄 휴업급여)(제4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손상자녀의 간병 또는 돌봄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휴직이나 제3항에 따라 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무규정
7	안 제91조의 22(부모돌봄 휴업급여)(제5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또한 휴직으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함	의무규정
8	안 제91조의 22(부모돌봄 휴업급여)(제6항)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 기간 및 복귀 후 고용유지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6조(보험 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제1항)	○	—
2	안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조치가 시행될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이 지급됨 - 그러나 현시점에서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건강손상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안 제91조의22 (부모돌봄 휴업 급여)(제1항)	○	—
4	안 제91조의22 (부모돌봄 휴업 급여)(제2항)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단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다)하거나 퇴직한 후 다른 사업장에 단시간 취업을 하여 임금이 감소한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시점에서 건강손상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중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이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5	안 제91조의22 (부모돌봄 휴업 급여)(제3항)	○	—
6	안 제91조의22 (부모돌봄 휴업 급여)(제4항)	—	• 미대상 -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7	안 제91조의22 (부모돌봄 휴업 급여)(제5항)	—	• 미대상 -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8	안 제91조의22 (부모돌봄 휴업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급여)(제6항)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공단의 사업 주에 대한 지원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지원단가 및 지원내용 등 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 기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 및 최저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¹⁾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91조의2제3항은 건강손상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의 돌봄과 간병을 위해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모돌봄 휴업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으로 부모돌봄 휴업급여가 도입될 경우 산재보험기금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산재 인정 건수가 변화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특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여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건강손상 장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및 최저임금상승률(2024.10 기준)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3.2	3.6	3.9	3.8	3.8	3.8	3.8
최저임금상승률(%)	2.5	1.7	3.9	3.8	3.8	3.8	3.8

에 또는 질병이 있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부모돌봄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²⁾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본 추계서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와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수) 부모돌봄 휴업급여 수급자 수는 최근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산재 인정 현황을 토대로 추계

-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산재 인정 현황을 보면 연간 최대 지급건수가 4건이므로 이를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며, 건강손상 자녀의 부모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이지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아닐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가정
 - 현행법은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산업재해는 여성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으나, 본 추계서는 부부가 모두 산재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인 것으로 가정
 - 또한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는 등의 제도 변화를 이유로 추계기간 동안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산재 인정 건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2]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산재 인정 현황: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8.
신청	4	—	—	1	4
승인	4	—	—	1	3

자료: 고용노동부

□ (지원단가)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부모돌봄 휴업급여의 지원단가는 시나리오에 따라 나누어 산출

2)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건강손상자녀를 간병하기 위하여 휴직하였거나 퇴직하였을
 2. 다른 간병인이 없을 것(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 해당 요양 기간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 (시나리오1) 개정안은 제안이유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로 2년의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나리오 1은 2023년 기준 월평균 육아휴직 지원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본 추계서는 현재 추진 중인 육아휴직 특례 조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추계기간 동안 자녀의 출생 순위, 동일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순서 등 제도 내에서의 차등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 1인당 월평균 지원단가는 연간 육아휴직 재정소요액을 지급인원으로 나누고, 이를 평균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특례제도로 인해 실제 1인당 평균 지급단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집행액: 1조 7,970억원(2023년 기준)
 - ※ 지급인원: 126,008명(2023년 기준)
 - ※ 지급기간: 8.9개월(2023년 기준)

[표 3] 모성보호 급여 유형별 집행 현황: 2018~202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육아휴직 급여	1,058,853	1,212,143	1,297,525	1,657,231	1,796,995

주: 집행액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시나리오2) 개정안은 부모의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은 휴업급여에서 부담하며, 사업주가 유급으로 휴가를 주면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수급권자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³⁾ 지원단가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음
 - 시나리오2는 부모돌봄 휴업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2025년 기준 최저임금에 국회예산정책처 최저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시나리오3) 개정안은 장래에 발생할 부모돌봄 휴업급여에 있어 부모의 휴

3) 안 제91조의22(부모돌봄 휴업급여) ③ 건강손상자녀로 태어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요양 기간 중에 부모가 이 법에 따른 부모돌봄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부모돌봄 휴업급여 지급 기간에 상응하는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부모의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제52조의 휴업급여에서 부담하며, 사업주가 유급으로 휴가를 주면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수급권자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가 기간에 대한 임금은 휴업급여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나리오3은 현재 휴업급여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휴업급여의 평균 지급기간이 12개월 미만일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집행액: 18,648억원(2023년 기준)

※ 지급인원: 169,728명(2023년 기준)

- 부모돌봄 휴업급여의 평균 지원단가는 연간 재정소요액을 지급인원으로 나누고,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지급기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부모돌봄 휴업급여의 지급기간의 실제 사용기간은 개정안에 규정된 법정 부모돌봄 휴업급여 지급기간(2년)에 2023년 기준 법정 육아휴직 기간(12개월) 대비 실제 사용기간(8.9개월)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추계기간 동안(2026~2030년) 지급기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부모돌봄 휴업급여의 지급기간의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2023년 기준 법정 육아휴직 기간(12개월) 대비 실제 사용기간(8.9개월)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4]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부모돌봄 휴업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수급자 수(A, 명)		8	8	8	8	8	—	—
월평균 지원단가	시나리오1 (B1, 백만원)	1.78	1.85	1.92	1.99	2.07	—	—
	시나리오2 (B2, 백만원)	2.18	2.26	2.34	2.43	2.53	—	—
	시나리오2 (B3, 백만원)	0.98	1.02	1.06	1.10	1.14	—	—
지급기간(C, 개월)		17.8	17.8	17.8	17.8	17.8	—	—
추가재정소요(시나리오1) (D1=A×B1×C, 백만원)		253	263	273	283	294	1,367	273
추가재정소요(시나리오2) (D2=A×B2×C, 백만원)		310	322	334	346	360	1,672	334
추가재정소요(시나리오2) (D3=A×B3×C, 백만원)		140	145	150	156	162	754	1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Ⅲ.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및 최저임금상승률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최저임금 및 경기변동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부모돌봄 휴업급여의 지원단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될 경우 달라질 수 있으며, 적용대상자 수의 증감, 이들의 실제 휴가 사용기간 등에 따라 향후 실제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은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여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실제 사업대상자 수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